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98

발의연월일: 2024. 8. 22.

발 의 자:이기헌·조인철·이재관

이병진 • 박희승 • 박민규

박해철 · 김준형 · 채현일

오세희 • 윤건영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(이하 "조사기관"이라 함)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,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.

최근 매장유산 조사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안전수칙 위반으로 조사 요원·인부 등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,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어려운 상황임.

이에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 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조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안전사고 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285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「산업 안전보건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20285호 매장유산 보호	법률 제20285호 매장유산 보호		
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	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		
튣	륟		
제25조(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)	제25조(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)		
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	①	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		
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			
소하거나, 2년 이내의 범위에서		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			
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			
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			
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			
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			
소하여야 한다.		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9.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		
	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		
	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2		
	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		
	<u>경우</u>	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